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4-28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4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12호) 어선 흥성호, 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흥성호 · 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서\*\*(\*\*\*\* \* \*\* \* \*\*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태성호가 2023. 11. 9. 05:58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소재 울포말등대로부터 남서방 0.9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4도 52분 36초 · 동경 128도 07분 18초)에서 어선 흥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흥성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태성호가 흥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또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